

「정 보 통 신 망 이 용 촉 진 및 정 보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안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심사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및 제6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등)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서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화의 판매 또는 금융, 의료, 교육, 신문, 음악, 방송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 용역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이버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1인 또는 복수의 사람이 출연하여 제작한 음성, 영상, 음성 및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서비스

다.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정보를 검색하였을 때 그와 관련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 또는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②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질병 또는 해외거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9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64조의5제1항에서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9 제2호처목부터 그목까지를 각각 커목부터 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저목을 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위반행위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법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	법 제76조제2항제4호의	600	1,200	2,000
--------------------	---------------	-----	-------	-------

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4			
-----------------------------------	---	--	--	--

별표 9 제2호 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드. 법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 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5호	300	600	1,000
--	---------------	-----	-----	-------

별표 9 제2호 비고 중 “도목부터 초목까지의 규정(보목과 오목”을 “로목
부터 코목까지의 규정(소목과 조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
시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제3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5조의2(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등)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서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u> <u>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 <u>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u> <u>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u>

10만 명 이상인 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
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를 이용자가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화의 판매 또는
금융, 의료, 교육, 신문, 음악,
방송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
용역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
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률
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부호·문자·음성·음향
·화상·동영상 등의 정보
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
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
인 커뮤니티, 대화방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이버공간

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1인 또는 복수의 사람이
출연하여 제작한 음성, 영
상, 음성 및 영상을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
로 송신하는 서비스

다.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정보를 검색하였
을 때 그와 관련된 부호·
문자·음성·음향·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 또는 정
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서비스

②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는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
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
는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2시간 이

<신 설>

상의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질병 또는 해외거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9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64조의5제1항에서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5조의2제1항에 따

	<u>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u> <u>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자를 말</u> <u>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연 락 처	(02) 2110 - 1549